

**공동주택 경비원의  
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**

**2021. 8.**

**고 용 노 동 부**

## 안내 글

- 아파트 경비원은 단지 내의 순찰·방범 등과 같이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  - 이러한 감시 업무는 상대적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높지 않은 업무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, 휴게,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
  - 실제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에 대해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24시간 교대제 방식의 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이렇게 상시적인 야간근로를 수반하는 근무방식은 생체리듬을 교란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  - 특히 '21.10월부터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이 개정되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일부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, 이 경우 심신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
  - 한편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의 야간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무방식 개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있었던 개편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,
  - 향후 각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근무방식을 개편하고자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입니다.
  - 다만 단지마다 특성이 있고, 이해관계자 의견도 다를 수 있으며, 이 자료에서 소개하지 못한 좋은 사례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,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

# 순서

I. 기본 방향 .....	1
II. 대표적인 현재 운영방식과 개편 유형 .....	1
III. 유형별 상세 안내 .....	2
<유형1> 퇴근형 격일제 .....	2
<유형2> 경비원·관리원 구분제 .....	5
<유형3> 기타 교대제 .....	7

## I. 기본 방향

- ①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방식을 24시간 격일 교대제 위주의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「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」
- ②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「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」
  - 이해관계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 도출은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
- ③ 각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게 근무방식을 개편하면서도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「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」

\* 개편 이후에도 감단 근로자 승인이 필요한지,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필요

-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승인 요건과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

## II. 대표적인 현재 운영방식과 개편 유형

### □ 현재 운영방식

-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대부분 "24시간 맞교대제" 방식

⇒ 경비원 전체를 2개조로 나누어(A조, B조), A조가 오늘은 24시간 근무(B조 휴무), 내일은 휴무(B조 24시간 근무)하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

< 경비원 근무표 예시 >

	월	화	수	목	금	토	일
<b>A조</b> (6명)	07:00~07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07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07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07:00 (6명)
<b>B조</b> (6명)	휴무 (6명)	07:00~07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07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07:00 (6명)	휴무 (6명)

□ 사례에서 나타난 개편 유형

○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

<유형1> 퇴근형 격일제: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,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

<유형2> 경비원·관리원 구분제: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“경비원”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“관리원”으로 구분

<유형3> 기타 교대제: 경비원의 상주시간(근로시간+휴게)이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대제 변경

☞ 다음에서 각 유형별 특징 및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개편 사례를 소개

**Ⅲ. 유형별 상세 안내** (이하 기존 제도를 24시간 맞교대제로 가정)

**<유형 1> 퇴근형 격일제**

□ 개편 내용

- 경비원 전체를 2개조로 나누어(A조, B조),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,
- 근무하는 날에 근무조 모두가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, 일부만 당번을 정해서 24시간 근무하고, 나머지는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

\* 예) 경비원 12명을 A조(6명), B조(6명)로 편성 → 오늘은 A조, 내일은 B조가 근무하되, 각 조의 근무일에 2명씩 당번을 정하여 당번은 24시간, 그외 4명은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

< 경비원 근무표 예시 >

	월	화	수	목	금	토	일
<b>A조</b> (6명)	07:00~22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22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22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22:00 (6명)
	22:00~07:00 (당번 2명)		22:00~07:00 (당번 2명)		22:00~07:00 (당번 2명)		22:00~07:00 (당번 2명)
<b>B조</b> (6명)	휴무 (6명)	07:00~22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22:00 (6명)	휴무 (6명)	07:00~22:00 (6명)	휴무 (6명)
		22:00~07:00 (당번 2명)		22:00~07:00 (당번 2명)		22:00~07:00 (당번 2명)	

## □ 주요 특징

- 기존의 근무 형태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, 근무 장소에 상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일 출근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자 할 때 적용하기 좋은 방식
- 전체 근무시간은 출·퇴근 시간의 설정, 야간 당번의 주기, 휴게시간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지나, 보통 전체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됨
- 경비원의 출·퇴근 시간, 근무시간·휴게시간 및 경비 외 다른 업무 수행의 정도·빈도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

## □ 고려사항

- ① 경비원의 야간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,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보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금 감소가 없도록 노사 간 충분한 협의 필요

- ②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, 휴게,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고

- 경비원이 경비업무가 아닌 관리업무를 많이 수행할 경우 감단 승인이 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, 휴게·휴일을 준수하도록 퇴근시간, 야간근로 순번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

- ③ 야간경비를 위한 **당번은**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**야간 순찰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배치하고**, 적게 필요하면 적게 배치할 수 있음

\* 예) △야간 순찰 수요가 많은 경우는 각 조 인원의 절반씩, △야간 순찰 수요가 적은 경우는 최소인원(1~2명), △ 야간 순찰 수요가 매우 적은 경우는 당번 없이 전체 경비원이 격일 퇴근하는 형태 등 상황 따라 결정

- ④ 결과적으로 야간 경비인력은 축소되지만, 통상 야간에 휴게시간을 길게 운영하므로(7~8시간), **당번 근무자의 휴게시간 조정 등으로 경비인력 감소 효과는 일부 상쇄 될 수 있음**

\* 현재는 대부분 야간에 7~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나, "퇴근형 격일제"를 도입하게 되면 야간 휴게시간을 일부 줄이고, 근무시간을 다소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

## <사례 예시>

### 사례A

경비원 16명을 2개조(8명씩)로 나누어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, 근무일에 근무조 8명 중 일부(5명)는 밤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일부 당번(3명)은 야간까지 근무

#### □ 근무 방식

- (기존) 16명을 2개조로 나누어(각 조 8명) 24시간 맞교대제
- (변경) 16명을 2개조로 나누어(각 조 8명) 맞교대제 → 근무일에 8명 중 5명은 저녁에(10시) 퇴근하고, 당번 3명은 야간근무(24시간)  
\* 일요일 근무 인원은 절반(4명)으로 축소

#### □ 근무 시간

- (기존) 근로시간 14시간, 휴게시간 10시간 (상주시간: 6:00 ~ 익일 6:00)
- (변경) ① 퇴근일: 근로시간 12시간, 휴게시간 4시간 (상주시간: 6:00 ~ 22:00)  
② 당번일: 근로시간 13.5시간, 휴게시간 10.5시간 (상주시간: 6:00 ~ 익일 6:00)

#### □ 경비원 배치

- (기존) 동별 경비실에 한 명씩 근무
- (변경) 주간에는 동별로 한 명씩 근무, 야간에는 3인이 단지 순찰

### 사례B

경비원 6명을 2개조(3명씩)로 나누어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, 근무하는 날에 근무조 3명 중 일부(1명)는 밤 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일부 당번(2명)은 야간까지 근무

#### □ 근무 방식

- (기존) 6명을 2개조로 나누어(각 조 3명)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
- (변경) 6명을 2개조로 나누어(각 조 3명) 맞교대제로 근무 → 근무일에 3명 중 1명은 저녁에(10시) 퇴근하고, 당번 2명은 야간근무(24시간)

#### □ 근무 시간

- (기존) 근로시간 14시간, 휴게시간 10시간 (상주시간: 7:00 ~ 익일 7:00)
- (변경) ① 퇴근일: 근로시간 11시간, 휴게시간 4시간 (상주시간: 7:00 ~ 22:00)  
② 당번일: 근로시간 14시간, 휴게시간 10시간 (상주시간: 7:00 ~ 익일 7:00)

#### □ 경비원 배치

- (기존) 3개 초소에 각 1명씩 근무
- (변경) 주간에는 3개 초소에 각 1명씩 근무, 야간에는 2개 초소만 각 1명씩 근무

## <유형 2> 경비원·관리원 구분제

### □ 개편 내용

-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**경비원**과 경비 외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**관리원**으로 구분하여
    - 경비원은 종전처럼 **24시간 맞교대제\***를 유지하면서 경비업무를 전담하고(감단 승인이 필요)
    - 관리원은 **1일 8시간 근무 등 주간 근무로 전환**하여 근로시간·휴게·휴일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(감단 승인 대상 업무가 아님)
- \* 예) 경비원 12명을 경비원(6명), 관리원(6명)로 나누어,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제를 유지하고, 관리원은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(점심시간 1시간)하는 방식

### < 경비원·관리원 근무표 예시 >

- ① (**경비원:6명**) 기존의 24시간 맞교대제 유지 → 경비업무 전담

	월	화	수	목	금	토	일
<b>A조</b> (3명)	07:00~07:00 (3명)	휴무 (3명)	07:00~07:00 (3명)	휴무 (3명)	07:00~07:00 (3명)	휴무 (3명)	07:00~07:00 (3명)
<b>B조</b> (3명)	휴무 (3명)	07:00~07:00 (3명)	휴무 (3명)	07:00~07:00 (3명)	휴무 (3명)	07:00~07:00 (3명)	휴무 (3명)

- ② (**관리원:6명**) 주5일 주간 근무로 변경 → 관리업무 전담

	월	화	수	목	금	토	일
<b>C조</b> (3명)	09:00~18:00 (3명)	09:00~18:00 (3명)	휴무 (3명)	09:00~18:00 (3명)	09:00~18:00 (3명)	09:00~18:00 (3명)	휴무 (3명)
<b>D조</b> (3명)	09:00~18:00 (3명)	휴무 (3명)	09:00~18:00 (3명)	09:00~18:00 (3명)	09:00~18:00 (3명)	휴무 (3명)	09:00~18:00 (3명)

### □ 주요 특징

- 관리업무가 많은 단지에서 전체 경비원이 경비와 관리업무를 동시 수행하여 감단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
- 또한 기존 경비원의 선호에 따라 일부는 격일 맞교대제를 선호하고, 일부는 매일 출근하더라도 주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
- 경비원의 근로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관리원으로 전환한 경우의 근로시간은 감소할 수 있음



## □ 고려사항

- ① **관리원으로 전환**하는 경우, 감단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되므로 (근로시간·휴게·휴일 적용) 이에 따라 임금과 관리비 등의 변동요인 발생 → 큰 폭의 변화가 없도록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 필요

\* 경비원을 관리원(일반 근로자)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시간, 휴게·휴일 준수 필요 → 연장·휴일근로수당, 주휴수당 등 발생 가능

- ② 아파트 단지의 업무특성(야간 경비 수요, 관리업무 수요 등)에 따라, **경비원과 관리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**

- 경비원의 경우, 야간근로 및 총근로시간 감소를 위해 24시간 맞교대제를 퇴근형 격일제, 3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
- 관리원의 경우, 아파트 사정에 따라 1일 근무시간, 휴무일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**주5일제 또는 주6일제** 등 선택이 가능하고, **오전·오후 근무조**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

- ③ 경비원과 관리원을 구분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**경비원은 경비업무를, 관리원은 관리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**

## 〈사례 예시〉

### 사례C

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절반씩 나누어,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제를 유지하고, 관리원은 오전·오후조로 나누어 주6일 근무

#### □ 근무 방식

- (기존) 8명을 2개조로 나누어(각 조 4명)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
- (변경) 8명 중 4명은 경비원(24시간 맞교대제) 4명은 관리원(주6일근무)으로 근무

#### □ 근무 시간

- (기존) 근로시간 16시간, 휴게시간 8시간 (상주시간: 6:00 ~ 익일 6:00)
- (변경) ① 경비원: 근로시간 15시간, 휴게시간 9시간 (상주시간: 6:00 ~ 익일 6:00)  
② 관리원: △(오전 근무조) 근로시간 9시간, 휴게시간 2시간(상주시간: 6:00 ~ 17:00)  
△(오후 근무조) 근로시간 9시간, 휴게시간 1시간(상주시간: 13:00 ~ 23:00)

\* 토요일은 6시간 근무, 일요일 휴무

#### □ 경비원 배치

- (기존) 권역별 3개의 경비초소에 근무(1개 초소는 2명)
- (변경) 정, 후문 2개 경비초소 한 명씩 근무

## 사례D

경비원(4명)을 순찰관리원(3명)과 환경관리원(1명)으로 나누어, 순찰관리원은 주4회는 8시간 근무(3명이 8시간씩 교대), 2회는 12시간 근무(2명이 12시간씩 교대, 1명 휴무)하고, 관리원은 주6일 근무

### □ 근무 방식

- (기존) 4명을 2개조로 나누어(각 조 2명)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
- (변경) 4명 중 3명은 순찰관리원, 1명은 환경관리원으로 구분하고 근무방식도 각각 변경
  - ① 순찰관리원: 8시간 근무(주4회), 12시간 근무(주2회), 휴무(주1회)
  - ② 환경관리원: 주간 전담, 주6일 근무

### □ 근무 시간

- (기존) 근로시간 17시간, 휴게시간 7시간 (상주시간: 7:00 ~ 익일 7:00)
- (변경) ① 순찰관리원: △(8시간 근무) 근로시간 7시간, 휴게시간 1시간  
(상주시간: A 6:00~14:00 / B 14:00~22:00 / C 22:00~익일 6:00)  
△(12시간 근무) 근로시간 11시간, 휴게시간 1시간  
(상주시간: A 6:00~18:00 / B 18:00~익일 6:00)
- ② 환경관리원: 근로시간 8시간, 휴게시간 1시간 (상주시간: 8:00 ~ 17:00)  
\* 토요일은 4시간 근무, 일요일 휴무

### □ 경비원 배치

- 1개 경비 초소에 근무(2명→1명)

## <유형 3> 기타 교대제

### □ 개편 내용

- 단지 상황에 맞게 경비원의 상주 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교대제 방식으로 개편: 3조 교대제(주주야야비비, 주당비 등), 주·야간 전담제 등

### □ 주요 특징

- 경비원이 24시간 상주 또는 야간근로 등을 이유로 24시간 맞교대제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기 좋은 방식
- 이 경우 통상 기존의 "24시간 맞교대제"에 비해 근무일은 증가하면서, 상주 시간 및 전체 근로시간은 감소

□ 고려사항

- ① 단지별 특성과 상황이 모두 상이 → 몇 가지 유형의 교대제 근무형태 중 특성에 맞는 방식을 결정하고,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할 필요
- ② 경비원의(감단승인 유지 가정) 야간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 →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보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금 감소가 없도록 노사 간 충분한 협의 필요
- ③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, 휴게,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 → 경비원이 관리업무를 많이 수행하여 감단 승인이 안되는 경우 근로시간, 휴게, 휴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퇴근시간, 야간근로 순번 등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
- ④ 경비원의 경우 매일 근무 등 근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, 입주민의 경우 근무하는 경비인력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것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→ 이에 대한 이해·조정 필요

□ (구체적인 개편 방식) 3조2교대제, 주당비 등 다양한 형태

- ① (3조2교대제) 3개조가 번갈아 12시간 상주하는 방식의 교대제로, 주주야야비비(6일 주기), 주야비(3일 주기) 등의 형태로 근무

< 경비원 근무표 예시(주주야야비비) >

	월	화	수	목	금	토	일
<b>A조</b> (4명)	07:00~19:00 (4명)	07:00~19:00 (4명)	19:00~07:00 (4명)	19:00~07:00 (4명)	휴무 (4명)	휴무 (4명)	07:00~19:00 (4명)
<b>B조</b> (4명)	19:00~07:00 (4명)	19:00~07:00 (4명)	휴무 (4명)	휴무 (4명)	07:00~19:00 (4명)	07:00~19:00 (4명)	19:00~07:00 (4명)
<b>C조</b> (4명)	휴무 (4명)	휴무 (4명)	07:00~19:00 (4명)	07:00~19:00 (4명)	19:00~07:00 (4명)	19:00~07:00 (4명)	휴무 (4명)

- ② (주당비) 3개조가 (주간 근무) - (당번, 24시간 근무) - (휴무)를 번갈아 시행

< 경비원 근무표 예시 >

	월	화	수	목	금	토	일
<b>A조</b> (4명)	07:00~19:00 (4명)	07:00~07:00 (4명)	휴무 (4명)	07:00~19:00 (4명)	07:00~07:00 (4명)	휴무 (4명)	07:00~19:00 (4명)
<b>B조</b> (4명)	07:00~07:00 (4명)	휴무 (4명)	07:00~19:00 (4명)	07:00~07:00 (4명)	휴무 (4명)	07:00~19:00 (4명)	07:00~07:00 (4명)
<b>C조</b> (4명)	휴무 (4명)	07:00~19:00 (4명)	07:00~07:00 (4명)	휴무 (4명)	07:00~19:00 (4명)	07:00~07:00 (4명)	휴무 (4명)

③ (주간/야간 전담제) 주간 전담, 야간 전담 경비원 별도 운영

- 12명을 주간 6명, 야간 6명으로 구분한 후
  - △주간업무는 각자 6일(또는 5일) 근무 후 1일(또는 2일) 휴무,
  - △야간업무는 다시 2개조로 나눠 격일 야간교대근무 방식으로 운영
- 주·야 근무조는 일정 주기별로 교체 가능(예: 1달 주기 등)

< 경비원 근무표 예시 >

① (주간 전담) 주 6일 근무 후 1일 휴무

	월	화	수	목	금	토	일
<b>A</b>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휴무
<b>B</b>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휴무	08:00~18:00 (1명)
<b>C</b>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휴무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
<b>D</b>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휴무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
<b>E</b>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휴무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
<b>F</b> (1명)	08:00~18:00 (1명)	휴무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	08:00~18:00 (1명)

\* 주5일 근무 후 1일 휴무, 주6일 근무 후 1일 휴무 또는 주 5.5일 근무 후 1일 휴무 등 단지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 (위의 표는 주 6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나타낸 것임)

② (야간전담) 격일 교대 근무

	월	화	수	목	금	토	일
<b>G조</b> (3명)	18:00~0800 (3명)	휴무 (3명)	18:00~0800 (3명)	휴무 (3명)	18:00~0800 (3명)	휴무 (3명)	18:00~0800 (3명)
<b>H조</b> (3명)	휴무 (3명)	18:00~0800 (3명)	휴무 (3명)	18:00~0800 (3명)	휴무 (3명)	18:00~0800 (3명)	휴무 (3명)

<사례 예시>

사례E

경비원 6명을 2개조(3명씩)로 나누어 24시간 맞교대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3개조(2명씩)로 나누어 12시간씩 3조2교대제로 변경(주주야야비비)

□ 근무 방식

- (기존) 6명을 2개조로 나누어(각 조 3명)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
- (변경) 6명을 3개조로 나누어(각 조 2명) 12시간씩 3조2교대제(주주야야비비) 근무

□ 근무 시간

- (기존) 근로시간 16.5시간, 휴게시간 7.5시간 (상주시간: 6:00 ~ 익일 6:00)
- (변경) △(주간) 근로시간 10시간, 휴게시간 2시간 (상주시간: 7:00 ~ 19:00)  
△(야간) 근로시간 11시간, 휴게시간 1시간 (상주시간: 19:00 ~ 익일 7:00)

□ 경비원 배치

- (기존) 정문초소 2인, 후문초소 1인 · (변경) 정문초소 1인, 후문초소 1인

사례F

2개조, 24시간 맞교대제에서 3교대제(주당비)로 변경

□ 근무 방식

- (기존) 4명을 2개조로 나누어(각 조 2명)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
- (변경) 3명을 주당비(8시간-24시간-휴무) 방식으로 근무  
\* 기존 4명에서 직원 1명이 퇴사한 후 3명이 남게 된 상황에서 근무방식을 변경

□ 근무 시간

- (기존) 근로시간 16시간, 휴게시간 8시간 (상주시간: 8:30 ~ 익일 8:30)
- (변경) △(주간) 근로시간 8시간, 휴게시간 1시간 (상주시간: 9:00 ~ 18:00)  
△(당번) 근로시간 15시간, 휴게시간 9시간 (상주시간: 8:30 ~ 익일 8:30)

□ 경비원 배치

- (기존) 동별 통합 2곳 초소 각 1인 · (변경) 권역별 1곳 초소 1인

사례G

2개조, 24시간 맞교대제에서 주·야간 전담 절반씩 나누어 각각 근무방식 변경

□ 근무 방식

- (기존) 8명을 2개조로 나누어(각 조 4명)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
- (변경) 8명을 절반씩 주간·야간 전담으로 구분하고 근무방식도 각각 변경  
① 주간: 주6일 근무 후 주 1일 순환 휴무(토, 일, 월, 화)  
② 야간: 격일근무(18:00~08:00)

□ 근무 시간

- (기존) 근로시간 17시간, 휴게시간 7시간 (상주시간: 6:00 ~ 익일 6:00)
- (변경) △(주간) 근로시간 10시간, 휴게시간 2시간 (상주시간: 7:00 ~ 19:00)  
△(야간) 근로시간 13.5시간, 휴게시간 0.5시간 (상주시간: 18:00 ~ 익일 8:00)

□ 경비원 배치

- (기존) 정문, 후문, 중문 초소에서 동별 통합 관리
- (변경) 주간전담은 동일, 야간전담은 정·후문 각 1인